

검 토 보 고

파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

○ 동 조례안은 1998년 10월 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음.

□ 제안이유

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·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, 휴직제도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가. 정년 연장규정 삭제.(안제8조)

나. 신체·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할 수 있는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“6월이상”에서 “지방공무원 복무조례”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축소.(안제10조)

다. 별정직 공무원의 휴직기간 및 효력에 관한 규정신설.(안제11조의2, 11조의3)

라. 정년단축, 근무상한 연령연장자, 신체·정신상의 장애에 의한 직권면직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.(안부칙제4항)

□ 검토의견

-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해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현행 휴직제도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.